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6일, 백종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백종헌 의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298억 8,800만원임.

현행법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범위,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이었던 자료 수집 및 기관 간

정보 요청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에는 전체 정신건강증진사업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특정 사업명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향후 사업이 개편·확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마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1조 및 제85조제6호에서 이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발표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2조의2제4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준비

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중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